

광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082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일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8.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2493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2019. 7.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7. 22. 접수 제1264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0년 12월경부터 D과 동업으로 양복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9. 22.경 C의 모친을 통하여 위 양복점 운영자금의 대여 요청을 받고서 2014. 9. 23. C 및 D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C는 2014. 12. 31. 동업으로 운영하던 양복점(상호 G)을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3.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카명908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재산명시결정등본이 2019. 7. 12. C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C는 2019. 7. 18. 이모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6413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2. C 모친의 부탁을 받고서 C 및 D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6. 2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라 한다), 그 대여의 증거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2014. 9. 23. 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C 및 D은 2015. 4. 8. 양복점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에게 추가 대여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C 및 D에게 3,425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되(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라 한다),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5,000만 원 중 일부 변제된 1,4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75만 원 및 이 사건 제2차 대여금 3,425만 원의 합계 7,000만 원을 대여원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2015. 10. 5. 채무자 D, 연대보증인 H, 대여금 7,000만 원, 대여일 2015. 6. 22.,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12. 31.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C 및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대여금에 대한 2018. 3.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1, 2차 대여금 합계 7,000만 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잔금 3,57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4.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D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제1, 2차 대여의 금전거래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대여금의 금액 등을 합의하였는바, 이는 기존채무인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의 채무자는 D이고, 연대보증인은 H이므로, C는 이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C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0년 12월경부터 D과 양복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C의 모친은 원고에게 위 양복점 운영자금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C 및 D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4. 9. 23. 5,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C와 D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1차 대여금 중 1,425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대여 잔금 3,5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에게 2015. 4. 8. 1,425만 원, 2015. 4. 17. 1,000만 원, 2015. 4. 21. 1,000만 원 등 합계 3,425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5. 6. 22. D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H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2015. 10. 5.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C는 2014. 12. 31. D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양복점을 폐업하였고, 이 사건 2차 대여는 폐업 이후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아닌 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을 초과하여 위 공정증서상의 7,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을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채권이 경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바(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참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C 및 D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잔금 채무 3,575만 원을 부담하고 있던 중 원고는 D에게 2015. 4. 8. 1,425만 원, 2015. 4. 17. 1,000만 원, 2015. 4. 21. 1,000만 원 등 합계 3,425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이 사건 제2차 대여 이후 2015. 10. 5. ‘원고가 2015. 6. 22. D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H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당사자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는 양복점을

폐업한 상태로서 이 사건 제2차 대여는 D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와 D 사이에 새롭게 2차 대여를 하면서 D의 이 사건 제1, 2차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확실히 하고, 그 금액 및 변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D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차 대여에 기한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소멸시켜 C의 채무부담까지 면하게 할 경개의 의사로 이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약속어음 채권이 피보전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2019. 7. 23. 5,000,000원, 2019. 8. 13. 30,000,000원, 2019. 8. 16.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의 이모인 점, C는 2019. 7. 2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피고는 2019. 7. 23.부터 2019. 8. 16.까지 C에게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일체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 C가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고서 6일 후에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평호, 판사 김혜진, 판사 이선희

별지

목 록

광주 서구 F 답 974㎡, 끝.

